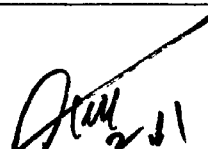


보	문	필	요	·	통	요
명	관	자	문	·	김	희
과	장				국	장

기안용지


(전화: 731-6346)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설30312-65	시행상 특별취급	시 장
보존기간	영구 · 준영구. 10. 5. 3. 1.		
수신처 보존기간	10년		
시행일자	87.2.		
보조 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1계장		
기안책임자	이상진 (김용덕)	문서 통제	김월 1987. 2. 14 통제관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시 장	1987. 2. 14 시정운영실
제 목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통	1987. 2. 14 제 23
(계 1안) 내부결재			
1. 울건25981-10(87.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토 올림픽준비단장으로 부터 강동구 이동, 방이동, 둔촌동입대의 도시계획 시설(운동장)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서울특별시 고시 제465호(84.8.8)로 변경 결정된 운동장의 일부에 올림픽선수촌및 기자촌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3. 우러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87.2.6)에 상정 심의 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첨부 : 관계서류 1건. 끝.			
(계 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font-size: small;">도시안심시</td> <td style="font-size: small;">1987.2.11</td> <td style="font-size: small;">제4호</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담당자</td> <td style="font-size: small;">신재계</td> <td style="font-size: small;">김우남</td> </tr> </table>	도시안심시	1987.2.11	제4호	담당자	신재계	김우남
도시안심시	1987.2.11	제4호					
담당자	신재계	김우남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33%;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33%; text-align: center;">[인]</td> <td style="width:33%; text-align: center;">[인]</td> </tr> </table>	○	[인]	[인]			
○	[인]	[인]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강동구청 도시장비과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2.							
서울특별시 장							
^{변경} ○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m ²)	비고			
기정	운동장	강동구 이동, 방이동, 둔촌동일대	2,748,000				
변경	"	"	2,014,116	감)733,384m ²			
^{변경} ○ 결정도면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생략)							
(계 3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시설계획과장							
제목 :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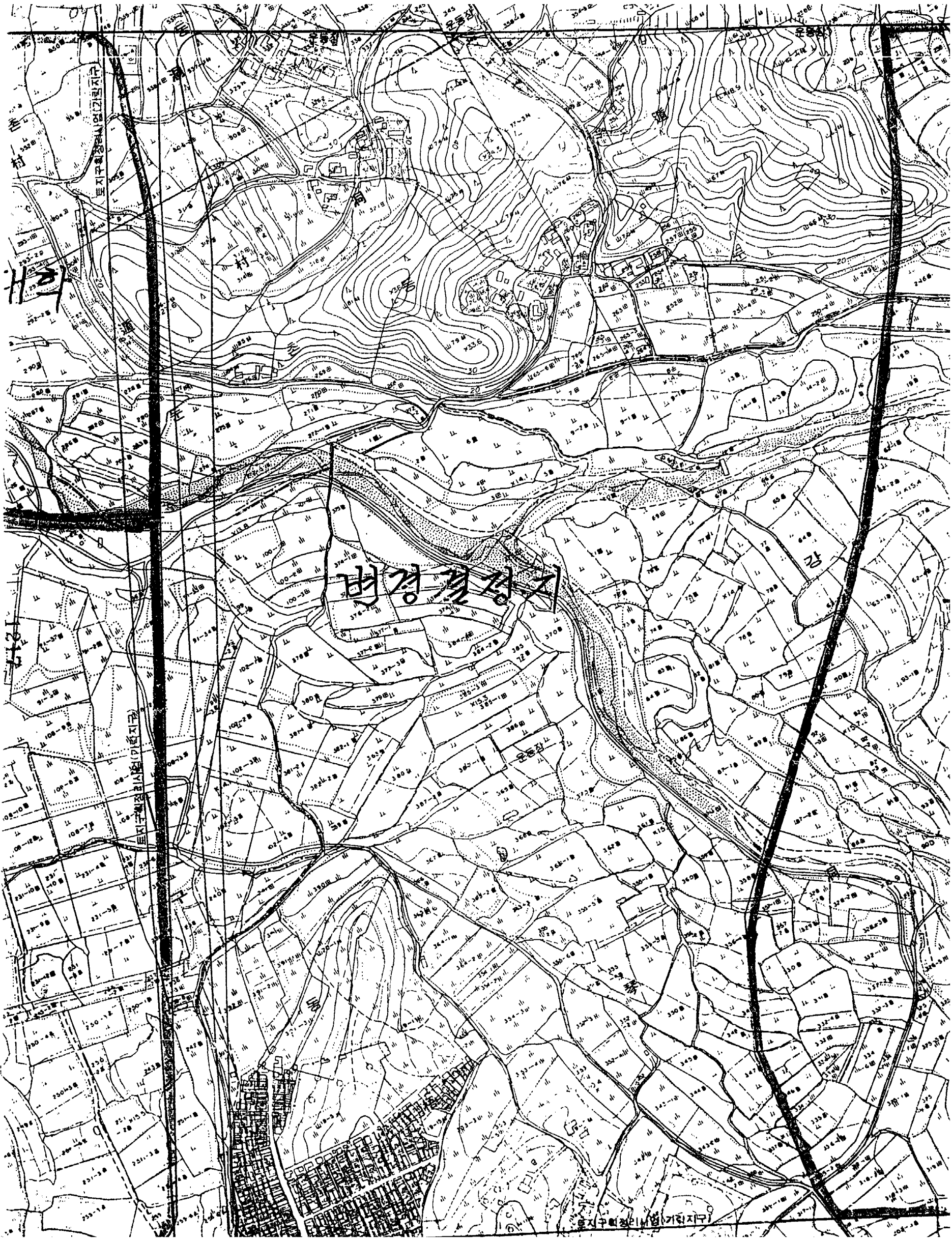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및 도면 1부. 끝.
(계 4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라. 게재내용 : 별첨
첨부 : 고시문 사본2부. 끝.
(계 5안)
수신 : 강동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갑을
1. 귀구 관내 이동,방이동,돈촌동일대의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도시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 고시문 사본및 도면 1부. 끝.

1987. 2. 14
도시계획과장

(제 6안) -108	
수신 : 올림픽시설건설관	발신 : 국장
참조 : 올림픽건축담당관	
제목 : 같음	
1. 육건25981-10(87.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강동구 이동,방이동,돈촌동일대의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에 필요한 도면 7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서문 사본및 도면 1부. 끝.	
(제 7안) -108	
수신 : 수신처 참조	발신 : 국장
제목 : 같음	
1. 우천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서문 사본및 도면 1부. 끝.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주택기획과장,	



경경경경



토지구획정리사업(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기타지구)